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8-158

제출년월일 : 2019. 5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'자치분권 종합계획(2018. 9.)'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, 조직운영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□ 주요내용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(안 제2조)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(안 제3조)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임기를 규정(안 제4조)

○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□ 제정조례안 : 붙임1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붙임3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5. 9. ~ 5. 19. (1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4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9조에 따라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정부정책과 연계한 안산시 조직운영 정책 수립
2. 기본인력계획의 수립
3. 조직진단 및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안산시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박 부 옥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조직교육팀장 이 선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윤 혜 원 (행정 3108)

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158호

제안년월일 : 2019. 6. 24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○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 하여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직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회 구성 사항 삭제·정비 (안 제2조, 제3조 및 제7조)

○ 불필요 항 번호 삭제 (안 제4조)

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두되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안 제3조를 삭제하고,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.

제3조(종전의 제4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이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안 제6조를(종전의 제7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2조(설치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한다. 1. 정부정책과 연계한 안산시 조직운영 정책 수립 2.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. 조직진단 및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안산시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	제2조(설치 및 구성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	〈삭 제〉

원 안	수정안
제4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	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5조·제6조 (생 략)	제4조·제5조 (원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)
제7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 ②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.	제6조(간사와 서기)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.
제8조 (생 략)	제7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